

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윤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
합니다.
- 각종 세금 및 요금에 대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인쇄·송달
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편익 증대 등의
효과가 있습니다.

이에 전자고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
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자고지 신청자 수는 미미한 실정입
니다.

실제 전자고지 신청 비율은 5.2%(15.9월 현재)에 지나지
않고 있으며, 이는 전자고지에 대한 홍보 부족과 더불어 현행

조례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고지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더불어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제한적 요소를 없앨 필요성이 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,

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, 이를 “납부 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